의안번호	제393호
의결연월일	2021.10.18.

-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0. 08. 예산군수

○ 회 부 일 자: 2021. 10. 08.

○ 상 정 일 자: 2021. 10. 18.

제2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경제과장: 박문수)

가. 제안이유

○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공동기금 법인인「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 연 처 :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 출연금액: 109,800천원(2022년 109,800천원 / 2023년 109,800천원)

- 가. 근로자 1인당 600천원 군비 출연 나. 예산군 수혜근로자 : 8개 기업, 183명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에 출연금 지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로 인한 소외감 해소 및 복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사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완호)

- 본 동의안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인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근로복지기본법」제7조 및 86조의2에서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직원의 복지혜택을 증가하기 위한 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8개 기업 183명의 종업원만 혜택을 보고있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보도록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

-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O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O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